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소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858

발의연월일: 2025. 6. 16.

발 의 자: 김소희·강승규·우재준

고동진 • 박충권 • 김상훈

김예지 · 서범수 · 최보윤

이헌승 · 김선교 · 송석준

최수진 • 주호영 • 엄태영

안상훈 · 김미애 의원

(17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장과 일반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·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시설의 동일한 한 가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.

이로 인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두 개의 행정주체가 중복된 행정처분을 함에 따라 업체에 과도한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를 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60조 단서 신설).

법률 제 호
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위반행위에 대해 어느 하나의 처분권자가 행정처분을 한 경우 다른 처분권자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0조(행정처분의 기준) 이 법	제60조(행정처분의 기준)
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	
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	
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	<u>다</u>
<u><단서 신설></u>	만,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
	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
	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
	처리업자의 경우 위반행위에
	대해 어느 하나의 처분권자가
	행정처분을 한 경우 다른 처분
	권자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
	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.